

# 가족관계 관련 증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a witness system in relation to family relationship

박 광 동\*  
Park, Kwang-Dong

### 목 차

- I. 서 론
- II. 관계 법률 검토
- III. 개별적 문제점
- IV. 개선방안
- V. 결 론

###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신용사회 실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절차적 번거로움과 실효성이 낮은 보증인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의 증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밖에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 임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 인감신고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생각될 수 있으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출생신고의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관공서를 통한 출생증명

논문접수일 : 2012.06.22

심사완료일 : 2012.07.25

게재확정일 : 2012.08.02

\* 법학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의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혼인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제도 구상을 할 수 있으나, 온라인을 이용한 혼인의사사실등록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사망신고에는 행정검시만을 이용하여 신고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주요한 증인제도로써 우선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는 관련 기관의 신원진술서 등의 서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는 연대보증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감신고시의 인우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법제적인 근거규정 및 법률의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제적인 개선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법제 개선보다는 단계적인 법제 개선을 하는 것이 국민적 법 감정에도 적당하고, 법제의 사회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증인, 보증, 가족, 바우처, 인감

##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신용사회 실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절차적 번거로움과 실효성이 낮은 보증인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협의이혼시의 증인제도, 군 미필자 귀국보증제도, 민간인 신원진술서 보증인제도, 기업은행의 신용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제도, 서울보증보험의 개인 계약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었다.

현행 가족관계 증인제도와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은 출생, 입양·파양, 혼인·이혼, 사망신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중 혼인신고, 출생·사망신고 등에서 아직까지 형식적인 절차로 보증인제도(인우보증)<sup>1)</sup>를 존치시

1) 인우보증(隣友保證)이란 귀하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

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및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한 혼인·이혼과 같은 창설적 신고의 경우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다(「민법」 제812조제2항, 제836조제2항, 제878조제2항). 다만 민법상 증인이 필요한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등본'의 첨부에 의해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민법」 제836조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이러한 증인 2인의 연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확인을 위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방안이 강구된다면, 형해화된 증인제도의 폐지를 통해 행정규제의 완화 및 행정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증인 2인의 연서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sup>2)</sup> 등에서는 형식적이고 요식화된 일부 증인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인을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신고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 밖에 인우보증과 관련한 신원진술서 및 입원약정서 상의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증진 및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팔려고 하는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성년(成年) 2명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위키백과, 인우보증 개념(<http://ko.wikipedia.org/wiki/%EC%9D%B8%EC%9A%B0%EB%B3%B4%EC%A6%9D>)]. 그러나 인우보증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친지·이웃 등 주변사람이 특정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 문서(예: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증인을 서주거나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광의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정의는 광의의 인우보증의 한 유형에 대한 것을 개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에 의한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분야 및 대상 중에 비효율적 제도 개선·폐지사항으로 혼인·이혼 신고 시 증인제도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230명) 발족(보도자료), ([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030301000000&b\\_code=000000027&act=view&list\\_no=177811&nPage=1025](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030301000000&b_code=000000027&act=view&list_no=177811&nPage=1025))].

## II. 관계 법률 검토

### 1. 가족관계 관련 사항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하여 신고에는 법적 효과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사실의 발생보고에 불과한 보고적 신고(예컨대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등)와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신고로 나눌 수 있다(예컨대 혼인·이혼신고 등).<sup>3)</sup>

가족관계 등록 관련 증인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출생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에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출생신고의 신고인이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이때 출생증명서의 작성은 보통은 의사나 조산사에 의해 작성되나,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45조, 제86조).<sup>4)</sup>

그리고 출생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동법 제23조), 타인에게 신고와 제출을 위탁하거나 우송(등기우편)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은 그 신고가 「민법」과 「가족등록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첨부서류의 유무, 기재사항 등의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것이지, 그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나 신고인의 진의 여부와 같은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sup>5)</sup>

3) 법원행정처, 「2011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1, 220면.

4) 법제처, 출생신고 절차,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5&cciNo=1&cnpClsNo=1>).

둘째, 혼인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12조제2항에서 혼인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에 의하면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그리고 혼인신고는 대리로 할 수 없으나, 부부 중 1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제3항, 제23조제2항). 또한 당사자와 증인 2명이 이미 완성한 혼인신고서는 이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 그 제출을 남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다.<sup>5)</sup>

다만,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에 의하면 '혼인신고서에 「민법」 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와는 달리 이혼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하여서 증인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가정법원의 판사가 해당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이혼신고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sup>6)</sup>

그리고 이혼 신고 시에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에서는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협의이혼의 경우에 법원의 이혼의사

5)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9, 63-64면.

6) 이 경우 위임받은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고 사자일 뿐이다[박동섭, 상계서, 98면].

7) 이혜진, "협의이혼의 요건과 그 하자에 관한 쟁송절차", 「동아법학」 제47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36면.

확인을 받으면 2인 이상의 증인 없이 협의이혼신고가 가능하다.

넷째,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에서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망 신고 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의 하나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서면의 인우보증인은 사망신고인 이외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인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호적선례4-92).

그리고 「호적법」 상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사망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사망사실을 아는 인우보증인(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그 신고를 함으로써 사망에 준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만약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신고를 하였다면 비록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우보증인의 보증서를 형식적으로 첨부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망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호적선례2-239).

또한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증명인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망자의 시신을 확인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사망자의 사망 당시에 11세 내지 12세였고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시신을 확인한 바 없이 남에게 들어서 즉, 전문(傳聞)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선례 200811-3).

## 2. 기타사항

첫째,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에 대해서 보면, 국가정보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신원조사를 행하고 있다(「보안업무규정」 제31조). 신원조사사항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본적·주소, 호주 및 본인과의 관계, 보증인, 교우관계, 정당 및 사회단체 관계,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상벌관계, 인품

및 소행, 병역관계, 해외거주사실,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그리고 「병역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이나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지원서에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신원진술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친교인물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04호(2009.12.18.개정)에 의하면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의 신상정보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인감 신고 시의 인우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인감증명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인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Ⅲ. 개별적 문제점

#### 1. 가족관계 사항

##### 가.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고대상인 출생자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신고하게 된다(「가족관계등록법」 제3조, 제21조, 제44조, 제45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122조, 제50조).

이때 출생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의사나 조산사에 의해 작성된다. 다만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이 증명서로 갈음하게 된다.

그런데 출생자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출생증명서로 갈음하게 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sup>8)</sup>

또한 출생신고인과 보증인 명의의 증명서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증대되고 있다.

#### 나. 혼인신고

2010년 혼인은 32만 6천 1백 건으로 2009년 30만 9천 8백 건보다 1만 6천 3백 건, 5.3% 증가하였다. 특히 남·여 모두 초혼은 증가하였으나, 재혼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8세, 여성 28.9세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sup>9)</sup> 그리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4천2백 건으로 총 혼인 중 10.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및 기명날인을 받아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청하고, 신청 5일후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서 혼인관계 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혼인신고서는 신청한달 이내에 가정법원으로 송부하게 된다.

그런데 혼인 신고 시에 혼인당사자가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증인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면부지의 주변인에게 증인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sup>10)</sup>

8) 매일경제, “허위출생 신고 통해 가상인물 만들어 사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49093>): 머니투데이, “아들 한국인으로 허위 출생신고 베트남 20대女 구속”,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21812548285671&outlink=1>).

9)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11, 2-12면.

이에 반해 민원담당직원은 증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혼인신고에서 증인제도는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sup>11)</sup> 즉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사를 증명하고, 혼인신고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증인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혼인신고시의 증인제도의 도입은 현대와 같이 핵가족화 실정에 있는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컨대, 증인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외의 타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혼인의사확인 절차의 부재로 생긴 허위 혼인신고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에 의한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sup>12)</sup>

#### 다. 사망신고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람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항). 그리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하여만 발급이 가능하다(「의료법」 제17조제1항, 제5항).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우증명을 통해 사망사실을 증명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증명서에는

- 10) 민법상 증인을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에 있어서 외국인도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제법 질서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속주주의 법리에 따라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민법」이 적용되는바, 대한민국에 있는 자로서 성년자이고 신분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증인적격 내지 증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외국인인 증인이 성년자인지의 여부는 「국제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본국 법에 의하는바, 여기서의 본국 법은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당시의 본 국법을 의미한다[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7-6].
- 11) 호적공무원에게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혼인의사의 존재와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이화숙,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와 신고”, 「민사법학」 제3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619면].
- 12) 권익위원회, 「가족관계 등록상의 불합리한 신고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 2011, 4면.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3항).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인우보증 비율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크고, 사유를 기재토록 한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다.<sup>13)</sup>

그런데 이러한 인우증명을 계속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도시지역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sup>14)</sup> 또한 사망신고 절차나 관리상의 문제로 최근 실시한 연금수급원자 중 일부는 사망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sup>15)</sup>

## 2. 기타사항

### 가.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

「보안업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 취업, 의무·법무사관 후보생의 현역·대체 복무 지원시 등 예정자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34조, 「병역법시행규칙」 제79조). 이 경우에 지원자의 신원조사 및 조회를 목적으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이 신원기록관리는 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통보된 수형인명부 및 법원으로부터 통보되는 한정치산 등본 등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13) 권익위원회, 상계서, 13면.

14) 경인일보, "입원 50대 가장 가족들이 사망신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448>): 노컷뉴스, "'언니가 여행 중 죽었어요. 보험금 20억 주세요' 간 큰 자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33759>) 등.

15)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망사실확인서가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시스템이어서 모의에 의한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 존재, 또한 일부는 사망사실확인서 발급대상도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이 있어서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 후 화장을 위해선 '인우보증 2명의 보증에 의해 읍면동장의 사망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죽어서도 '찬반'신세?...인우보증제도 '허술' 범죄악용 '우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1128>)].

현대에 와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신원진술서의 신원조사 항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직무와 무관한 타인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현행 신원진술서는 결격사유 조사 등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인적관계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보증인 및 후원자, 교우관계 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인 및 후원자, 교우관계 등 타인의 정보의 기재사항 유지는 간접적으로는 행정규제의 강화 및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나.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

입원보증금은 병원이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입원 전에 입원비 등의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금전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2006년 「의료급여법」에 병의원의 입원보증금 등 청구금지 위반 시에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공정거래위원회 '구'표준약관 제10004호) 하였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에는 진료에 따른 의료비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어떠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11조의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그러나 대형병원에서는 입원보증금 대신 법적 금지 조항이 없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4호 입원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병원에 입원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 병원 입원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sup>16)</sup> 즉, 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제도는 병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의료법의 진료거부 행위(「의료법」 제15조)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6) 소비자뉴스, "진료기록 거부·입원보증금 처벌... 醫政충돌", (<http://www.mediso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90>).

#### 다. 인감 신고 시 인우보증제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 발급제도는 1914년 도입 후 약 100년간, 국가가 후견 인적 지위에서 본인의 진정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인감증명제도 자체가 하나의 정부규제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고, 운용상의 문제점 등의 발생 및 사적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감안하여 점차 인감증명 사용범위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다.<sup>17)</sup>

인감 신고 시 인우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인감증명법」 제7조제2항에서는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감 신고 시의 인우보증제도도 간접적 행정규제의 강화 및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게 된다.

### IV. 개선방안

#### 1. 가족관계 사항

##### 가. 출생신고

출생 신고 시 주변인에 의한 관행적인 인우보증을 허용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에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보건소)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만 허용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

17)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의 1단계로 인감증명 사무 감축과 관련하여 120종을 폐지하였다. 인감사무감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2009.7.29)에서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중 1단계 과제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키로 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이다[행정안전부, 인감사무(감축) 폐지 리스트, ([http://www.mopas.go.kr/gpr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bonbu/admi&menu=admi\\_11\\_02](http://www.mopas.go.kr/gpr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bonbu/admi&menu=admi_11_02))].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 법률 제44조 제4항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혹은 관공서(보건소)에서 발급된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첫째, 통·반장과 행정청의 연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즉 관공서(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구역상의 통·반장과 연계하여 시·군·구청이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sup>18)</sup> 이때 연계시스템의 유형으로는 off-line에 의한 방안과 on-line에 의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둘째, 출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 나. 혼인신고

혼인신고에서 증인이 필요한 것은, 신분의 변동에 수반하는 중요한 신고에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중시되는데, 이러한 신고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증인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당사자 의사의 신뢰성 확보 및 증명성 확보를 위해 증인제도는 필요하다.<sup>19)</sup> 다만 혼인신고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사자가 분명히 결혼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만 가지는 것이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허위의 증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허위의 신고서의 증인으로서 책임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 민사법상의 보증인이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8) 일본 호적법 제49조에서는 기타의 자가 범무성령, 후생노동성령에 정하여진 출생증명서를 신고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19) 元市民課, "誰も教えてくれない戸籍の話", (<http://www004.upp.so-net.ne.jp/hitosen/dare/dare.shou.html>).

이러한 혼인신고와 관련한 증인제도에 대해 법조문에서 무조건 삭제하는 방안 보다는 일정한 개선방안을 두고 증인제도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sup>20)</sup> 이 경우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첫째, 관습에 의하여 혼인식을 거행한 후 2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거행지의 시·읍·면의 장의 확인을 얻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확인에 의한 혼인신고제도의 도입이 있다(확인에 의한 혼인신고제도).<sup>21)</sup>

둘째, 혼인거행시에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자격을 주례와 전문가자격자로 제한하는 증인강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식에 관여한 주례가 제1증인으로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하고, 전문가자격자가 제2증인으로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한 후에 신고서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혼인거행시에 혼인신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주례와 전문가자격자를 통한 증인강제제도).<sup>22)</sup>

셋째, 온라인을 활용한 혼인의사사실등록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는 혼인의사사실등록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혼인당사자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면, 첫째, 확인에 의한 혼인신고제도는 혼인의사가 혼인신고 당시에 소멸한 경우의 문제와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타방 당사자의 명확한 혼인의사의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주례와 전문가자격자를 통한 증인강제제도는 혼인식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타당하나, 혼인식을 거행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주례는 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주례에게 증인을 강제하는 것이 타

20)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민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민법」 제812조는 제정 시부터 있었던 것이고, 행정청이 혼인의사확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규정 유지의 의견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청이 이에 대한 실질적 조사권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으며, 혼인신고의 경우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증인제도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규정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1) 고창현, “한국의 법률혼주의의 확립과정과 입법론적 고찰”, 「법정대논문집」 제1집,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1973, 20면; 이화숙, 전계서, 633면.

22) 정주수, “혼인신고 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법행정」 제32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123면; 이화숙, 상계서, 634면.

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방식은 일반 국민에게 비용적·절차적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을 활용한 혼인의사사실등록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어떻게 제도를 구축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온라인에 의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확인청(읍·면·동사무소)과 수요기관(대법원)간의 네트워크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혼인 당사자 의사의 사전 등록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도입은 증인을 갈음할 수 있는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음으로써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상의 간소화 및 의사확인의 정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확인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개인정보 누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증인을 세우는 입장과 증인의 입장에서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고려 점은 온라인에 의한 혼인의사사실등록확인을 어느 곳에서 할 것인가이다. 여기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민원24포털을 활용하는 방안<sup>23)</sup>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활용방안<sup>24)</sup>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사전등록 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전 등록 시 민원인의 접근성이 행정청에서 하는 것보다 떨어지고, 정보접근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청(민원24포털)을 이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에 의한 혼인의사사실등록확인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의5를 신설하여 '혼인신고서에 혼인의사등록사실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12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3) ①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민원인이 정부사이트(민원24) 접속 → ③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④확인서 작성 → ⑤전자서명 → ⑥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자동 SMS 등의 통보시스템 서비스로 안내

24) ①관할법원(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민원인이 법원사이트(전자민원센터) 접속 → ③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④확인서 작성 → ⑤전자서명 → ⑥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자동 SMS 등의 통보시스템 서비스로 안내

## 다. 사망신고

사망 신고 시 관행적인 인우보증에 의한 신고조항을 엄격히 규율하고, 예외 규정으로 행정검시<sup>25)</sup>만이 허용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현행 관공서(보건소, 경찰서)에서 발급된 증명서, 경찰서조서 등만 인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행정검시 등으로 이루어진 공적 증명서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매장 혹은 화장 등을 위한 장례 절차를 강화하여 사망신고 지연 시에 과태료 부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과를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을 신설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를 치루는 경우에는 고인의 장례절차에 대해 관할 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법률적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2. 기타사항

### 가.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

가족사항을 제외한 보증인 및 후원자, 교우관계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 항목을 신원진술서 및 채용등록원서 서식에서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인 및 후원자, 친교인물, 교우관계 등에 신원진술서상의 적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

25) 행정검시는 범죄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체 또는 사태(死胎)에 관하여 경찰관 등 일정의 행정목적에 위하여 행하는 검시를 말한다[임상곤, 「정보분석론」, 백산출판사, 2003, 301면].

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신원진술서의 사실상의 강제성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병역법시행규칙」 제79조를 근거로 하는 신원진술서 서식과 각종 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는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공무원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의 서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 나.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입원약정서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제3자에게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입원약정서는 입원 환자 본인이 입원과 관련해서 병원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배상한다는 의미를 기재한 것일 뿐, 제3자의 치료비 지급보증을 위한 약정서는 아니기 때문이다.<sup>26)</sup>

이러한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원보증금 금지조항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즉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원약정서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대보증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우처(voucher)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sup>27)</sup> 즉 바우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

26) 부산노컷뉴스, “입원약정서 서명한 제3자, 치료비 낼 의무 없어”, (<http://bs.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020&NewsCD=1542903>): 입원이 결정했을 때에, 환자에게 입원서약서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많으나, 해당서약서에 연대보증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서식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인과 달리, 연대보증인은 본인과 같은 지불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의 변제 자금력의 유무에서 관계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입원서약서에 보증인의 기재를 요구하는 서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연대보증인이 아닐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환자의 의료비지불 채무에 대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한들,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27) 일반적으로 증빙을 의미하고, 쿠폰(표)과 동일하게 재화·서비스와의 교환권을 가리키는 바우처(voucher)제도는 ①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에 대한 선택권 부여, ② 재정지원방식이 공급자에게서 지원되는 것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전환, ③ 서비스공급자간의 경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특히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의료바우처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바우처가 교부된 개인(수급자)에 의한 선택이 허용되고, 바우처의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되도록 용도제한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특징으로 인하여,<sup>28)</sup>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의 대체방안으로서 사용의 명확성과 담보의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인감 신고 시 인우보증제도

본인이 창구에서 신청하고, 후일 읍·면·동사무소에서 조회·회답서를 본인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통·반장을 통해 송부하고, 본인이 동봉의 용지에 일정사항을 기입하여, 기한 내(조회서를 송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된 인감과 본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건강보험증 등 정본 및 사본 포함)를 직접 지참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서면 혹은 대리 신고의 경우에 대리인이 해당자의 위임장을 받아 인감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이때 위임장의 진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장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보다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 시스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물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그 시행 즉시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

쟁을 유도하는 시장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④ 바우처는 선택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그 선택권 범위를 조정·통제할 수 있고, ⑤ 바우처 수요자와 바우처 공급자 모두에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⑥ 바우처시스템의 운영은 기존 사회서비스 지원방식인 공급기관의 지원방식 보다 수요자 지원방식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박정호,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리뷰」 제12집,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7, 9-10면; 정광호,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 「행정논총」 제45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63-64면; 박광동,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1, 19면].

28) 박광동, 상계서, 27면.

29) 2012년 2월 1일에 인감증명제도를 갈음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 성년자 1명의 보증을 삭제할 수는 없고, 병용 적으로 사용하다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인감증명법에서 삭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 론

현재 가족관계를 근거로 하는 각종 증인제도 및 그 밖의 주요한 증인제도 중 형식화 되고 요식화된 일부 증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가족관계 등록 관련 증인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출생, 혼인, 사망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과 관련하여서는 출생자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출생증명서로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신고 시 주변인에 의한 관행적인 인우보증을 허용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에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보건소)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는 통·반장과 행정청의 연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출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둘째, 혼인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12조 제2항에서 인우보증을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증인에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간소화와 의사확인의 진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써 온라인을 이용한 혼인 의사사실등록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의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사망신고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망 신고 시에는 행정검시만을 인정하는 방안의 구상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관련 증인제도 이외의 주요한 증인제도로써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 임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 인감신고시의 인우보증제

도가 문제되는데, 첫째,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는 관련 기관의 신원진술서 등의 서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원약정서 내용에서 연대보증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감 신고시의 인우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익위원회, 「가족관계 등록상의 불합리한 신고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 2011.4.28.
- 박광동,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1.
-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9.
- 법원행정처, 「2011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1.
- 임상근, 「정보분석론」, 백산출판사, 2003.
- 고창현, “한국의 법률혼주의의 확립과정과 입법론적 고찰”, 「법정대논문집」 제1집,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1973.
- 박정호,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리뷰」 제12집,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7.
- 이화숙,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와 신고”, 「민사법학」 제3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 이혜진, “협의이혼의 요건과 그 하자에 관한 쟁송절차”, 「동아법학」 제47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정광호,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 「행정논총」 제45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 정주수, “혼인신고 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법행정」 제32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행정안전부, 인감사무(감축) 폐지 리스트, ([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bonbu/admi&menu=admi\\_11\\_02](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bonbu/admi&menu=admi_11_02)).

元市民課, “誰も教えてくれない戸籍の話”, (<http://www004.upp.so-net.ne.jp/hitosen/dare/dare.shou.html>).

법제처, 출생신고 절차,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5&cciNo=1&cnpClsNo=1>).

위키백과, 인우보증 개념(<http://ko.wikipedia.org/wiki/%EC%9D%B8%EC%9A%B0%EB%B3%B4%EC%A6%9D>).

광주광역시,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230명) 발족(보도자료), ([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030301000000&b\\_\\_code=0000000027&act=view&list\\_\\_no=177811&nPage=1025](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030301000000&b__code=0000000027&act=view&list__no=177811&nPage=1025)).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11.

[Abstract]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a witness system in relation to family relationship

Park, Kwang-D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i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Adjunct*

*Professor of kangnam Uni., ph.D.in Law*

It is actual situation that a surety system of which procedure is complex and efficacy is low is abroga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zation of credit society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tc. in Korea. However,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witness system of the birth registration, marriage

registration and death registration, etc. in relation to the family relationship. Further,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urety system of an identity statement, etc. and the joint surety system of a director agreement and the friendship surety of a seal registration.

Even though various plan can be devi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systems, in case of a birth registration first of all in relation to family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use the confirmation system of the birth certification via medical institutions or public agencies. Also, even though various systems relating to a marriage registration can be devised, it may be effective to utilize the confirmation system for the registration of an intent to marry using on-line system.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truth of registration matters in the death registration using only an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In other principal witness systems, first of all, the surety system of an identity statement, etc. requires to improve the format of an identity statement, etc. in relevant agencies and the joint surety system of a director agreement may utilize a voucher system to a low income bracket instead of delet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joint suret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lectronic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friendship surety of a seal registration.

As a matter of course, it is required to amend partially the legislative applicable provisions and regu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systems. However, with regard to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the phased legislative improvement rather than entire legislative improvement will be appropriate to people's legal emotion and can contribute to the social validation of legislation and the harmony of legislative stability.

**Key words** : witness, guarantee, family, voucher, one's seal